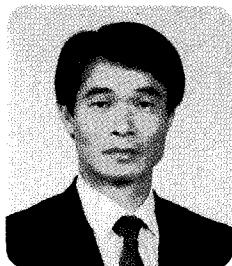


의장법 해설(1)



이상호 · 변리사

I. 의장이란 무엇인가?

1. 의장의 정의

의장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를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디자인과의 차이

디자인(design)은 의장으로도 번역되나 의장 이외에도 계획·설계 및 도안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공업디자인, 장식디자인 등은 의장의 보호 대상이 되지만 도시계획디자인 건축디자인 등은 의장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다.

3. 실용신안과의 차이

다같이 물품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의장은 미적외관의 고안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차이점이 있다.

4. 상표와의 차이

- 의장은 신규성이 있어야 하나 상표는 특별 현저성이 있어야 하고
- 의장은 물품 그 자체의 외관으로 물품을 구성하나 상표는 물품에 첨부되는 것으로 물 품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며
- 상표는 문자를 그 구성의 주요소로 하거나 문자를 포함하는 것이 보통이나 특별히 도 안화된 문자가 아니면 의장의 구성요소가 될 수 없다.

목 차

- I. 의장이란 무엇인가?
- II. 의장의 구성요건
- III. 의장의 등록요건
- IV. 의장의 유사여부 판단
- V. 의장의 특유제도
- VI. 의장권의 침해와 구제조치
- VII. 심판의 종류
- VIII. 의장법 중 개정법률

〈고딕은 이번호, 명조는 다음호〉

II. 의장의 구성요건

1. 물품성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한다.

의장법은 물품의 수요증대를 통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물품성을 의장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의장과 물품은 불가분적 관계에 있으며 물품에 구체적으로 표현 또는 화체 되어야 비로소 의장의 대상이 된다.

가. 물품의 독립성

경제적으로 한 개의 물품이며 독립법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즉, 전체에서 그 한 쪽을 분리하면 전체의 형태가 변형되고 기능도 발휘할 수 없어 독립적으로 거래되지 못하는 조각들은 의장의 대상이 아니다.

(예) 병 주동이, 양말의 뒷굽 등

나. 물품의 유체성

법류상 물은 유체물과 무체물로 대별되고 유체물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누어 지며 의장법상 물품은 유체물에 한한다. 유체물이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오감에 의하여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는 물질을 말한다.

다. 물품의 종류

1)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한별 물품

가) 단일품

단일물이란 하나의 독립된 형태와 명칭을 가지고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지니지 않는 물을

말한다. 단일물은 연필, 지우개 등 물리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와 만년필, 뚜껑달린 컵 등 2이상의 부분에 의하여 조립되어 있지만 각 부분이 개성을 지니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단일물은 통상 단독으로 거래될 수 있는 물품으로 의장법상 일물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나) 합성물

합성물이란 2이상의 물품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물품을 이루는 것으로 그 구성물품이 개성을 지니지 않는 물품을 말한다(예) 장기알, 트럼프 등

합성물은 의장법상 단일물과 같이 일물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다) 집합물

집합물이란 2이상의 독립되어 있는 물(단일물 또는 합성물)이 집합하여 집합물 자체로서도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한편 집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물품도 독립하여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예) 커피셋, 응접셋 등

집합물은 집합물에 대한 특별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다물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라) 한별 물품

한별 물품이란 2종 이상의 물품이 그 개개로서는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나 관습상 한별의 물품으로 판매되고 사용되는 2종 이상의 물품을 말한다. 의장법은 한별 물품의 구분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되는 한별의 물품은 집합물로서 다물품이긴 하지만 1 물품으로 의제하여 1의장으로 의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으로 하고 있다.

2) 부품

가) 부품이란 물품의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로서 그것만의 분리가 가능하고 그 자체가 거래

상 교환가치를 갖는것을 말한다(예) 카메라의 후레쉬, 타이머 등

부품은 물품의 부분과는 달리 의장법상의 물품으로 다루어진다.

나) 부품의 물품 성립요건

① 호환성을 지닐 것

호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부품등이 일정한 규격을 가지고 있어서 일정범위의 완성 품에 대하여 자유로이 교체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상업의 발달에 따라 분업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일정한 규격하에 디자인된 부품을 완성품 업자가 적당한 것을 선택하여 조립하는 경향이 있다.

호환성은 자사제품에 대하여서만이 아니고 어느정도 타사제품에 대하여도 호환성이 요구된다.

②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을 것

부품이 의장법상의 일물품이 되기 위하여는 통상의 경우 그 물품이 그 업계에서 독립된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특정의 부품이 하나의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서만 독립하여 거래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고정관념이 아니고 시대나 산업구조, 재질, 판매, 형태 등에 따라 유동적인 관념이다.

다) 부속품

부속품이란 그 물품의 본질적인 기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 주체가 되는 물품의 용도를 확장하거나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 카메라의 케이스, TV 휠터 등

부속품은 주로 장식적인 효과를 주는 역할을 하며 부품과 마찬가지로 의장법상 물품을 구

성하는 것으로 본다.

라) 심사실무상 물품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① 부동산

다만, 부동산이라도 다량생산이 될 수 있고 운반이 가능한 조립가옥 등은 예외로 한다(예) 방갈로, 공중전화박스, 이동판매대, 방범초소 등

② 일정한 형체가 없는 것(예) 기체, 액체, 전기, 광열, 음향 등)

③ 분상물 또는 입상물의 집합으로 된 것

(예) 시멘트, 설탕 등

④ 합성물의 구성각편

다만, 적목완구의 구성각편과 같이 독립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의장등록의 대상이 된다.

⑤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품의 부분(예) 양말의 뒷굽모양, 병주둥이 등

⑥ 물품자체의 형태가 아닌 것(예) 손수건 또는 타월을 접어서 이루어진 꽂모양과 같이 상업적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의장으로서 그 물품자체의 형상으로 볼 수 없는 것

2. 형태성

가. 형상

물품의 형상이란 물품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윤곽을 말하며 모든 물품은 반드시 형상을 지닌다. 형상은 3차원의 공간적 넓이를 가지는 입체적 형상과, 2차원의 넓이만을 가지는 평면적 형상으로 대별되며 평면적 형상이란 손수건이나 직물지, 비닐지 등을 말한다.

나. 모양

물품을 장식하기 위하여 그 표면에 나타나는 선도, 색구분, 색흐림 등을 말한다.

선도라 함은 선으로 그린 도형을 말하며, 색구분이란 색과 색을 선으로 구획하는 것이 아니고 색칠로서 구분하는 것을 말하며, 색흐림이란 색과 색의 경계를 흐리게 하여 자연스럽게 옮아가는 것 같아 보이게 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모든 물품이 반드시 형상을 가지는 것은 달리 모양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요소는 아니다. 그리고 문자는 형상의 표면에 나타나는 선도라는 의미에서는 모양이라고 볼 수 있으나 문자 자체로 이미 공지·공용된 것은 독창성을 인정치 않고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알아보지 못하는 문자(고대문자, 사용되지 않는 문자등)와 연속 모양의 모티브로 써어진 문자 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자, 숫자 등은 삭제하여 하나 사용상 필요 불가결의 문자(Down, UP, ON, OFF등)는 의장의 설명란에 “○○도, ○○ 부분에 표시된 문자는 의장등록의 대상에서 제외함”이라고 명기하여야 한다.

다. 색채

색채란 시각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에 채색된 빛깔을 말하며 회색, 백색, 흑색의 무채색과 그 이외의 유채색으로 구분되고 유채색은 색상, 명도, 채도의 3요소로 이루어진다.

라. 형상, 모양, 채색의 한계

- 1) 형상과 모양의 결합
- 2) 형상과 색채의 결합
- 3) 모양과 색채의 결합
- 4)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

3. 시각성

의장은 물품의 외관에 대한 창작을 대상으로

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아서 식별할 수 있고 포착 가능한 의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 시각성의 요건

1) 시각만으로 의장을 파악할 수 있을 것 즉, 소리나 촉감등 청각이나 감각으로 파악되는 것은 제외된다.

2)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밀가루나 시멘트 같은 분상물이나 설탕같은 입상물의 일단위와 같이 육안으로 그 형태를 판별하기 어려운 것은 제외된다.

3) 외부로 부터 보이는 곳

분해하거나 파악하여야 볼 수 있는 곳은 제외되나, 피아노, 담배케이스 등과 같이 뚜껑을 여는 구조로 된 것은 의장의 대상이 된다.

4. 심미성

의장은 수요의 증대를 통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높은 수준의 고상하고 우아한 미학적가치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미감의 폭과 정도를 정하는 것이 어렵고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으므로 우리나라 의장심사 기준상 심미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기능, 작용, 효과를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외관상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 그러나 외관상의 변화가 그 물품의 기능을 좋게 할 경우에는 그 변화에 따른 미감도 좋게 일으키는 것으로 본다.

나. 의장으로서 짜임새가 없고 조잡감만 주는 것으로서 미감을 거의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 등이다.

〈계속〉